

연봉제규정

제정 2007.12.24	개정 2016.09.26	개정 2025.03.17
개정 2009.09.04	개정 2017.04.11	
개정 2012.01.01	개정 2018.03.01	
개정 2012.04.10	개정 2020.03.18	
개정 2012.10.04	개정 2020.08.25	
개정 2013.08.13	개정 2021.02.17	
개정 2014.01.21	개정 2021.07.20	
개정 2014.12.10	개정 2023.03.15	
개정 2015.04.16	개정 2023.07.19	
개정 2016.03.17	개정 2025.02.0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25.3.17.>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4., 2012.10.4., 2016.9.26., 2021.7.20. 2023.3.15.>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 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월평균급여”라 함은 매월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연봉액의 12분의 1)을 말한다.
4.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숙인적급여로서 보수규정상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급 포함), 명절휴가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액으로 기준기본급에 기본연봉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6. “성과연봉”이란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삭제 <2016.9.26.>
8. “경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하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9.26.>
9. “부가급여”라 함은 그 사람에게 속한 급여로서 제4호에 명시된 항목 이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말한다.
10.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1.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2. “기본연봉인상률”이라 함은 재단 임·직원의 기본연봉 인상비율을 말한다.

13. “당사자” 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 체결자를 말한다.
14. 삭제 <2021.7.20.>
15. 삭제 <2021.7.20.>

제 2 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대표이사 · 개방형임기직 · 일반직으로 한다. <개정 2020.8.25.>

제5조(연봉계약 체결자) ① 대표이사의 연봉계약은 재단 이사장과 체결하고, 직원의 연봉계약은 재단 대표이사와 체결한다. <개정 2017.4.11., 2020.3.18.>
 ② 연봉계약은 “별표 5”의 양식에 의하되, 계약서 원본을 2부 작성·서명하여 재단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 3 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 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12분할하여 지급하며, 경영성과급은 매년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개인별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8.13., 2016.9.26.>
 ② 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③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① 임 ·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연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발령일이 속하는 해당 월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1., 2021.2.17.>
 ② 재단의 직원으로서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2.10.4.>

제9조(결근자의 연봉) ① 취업규정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유급 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1.>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해당일수분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가족수당 제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4., 2021.2.17.>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연봉제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보수규정 제18조를 적용 지급하고 개인 성과연봉에서는 최저 지급율을 적용한다.
 ② 삭제 <2023.3.15.>

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인사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정직 및 강등 처분을 받을 경우의 연봉은 보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1., 2012.10.4., 2015.4.16.>
 1. <삭제 2015.4.16.>
 2. <삭제 2015.4.16.>

제11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강등된 직급의 평균 연봉월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본조신설 2012.4.10.]

[제목개정 2012.10.4.]

제12조(파견자의 연봉) ①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취업규정 제79조에 의해 교육 훈련 파견되는 임원 및 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 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 소속 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 4 장 임·직원의 연봉

제13조(기본연봉) ① 재단 임·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9.4., 2012.10.4.>

② 재단은 매 1년 단위로 임·직원의 연봉을 “별표3”의 한도 내에서 결정하며, 3급 이하 신규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1” 경력 환산표에 의한 경력기간을 산정하여 “별표4-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단, 모집 공고 시 경력직 채용이 아닌 경우 3호봉 이하로 한다. <개정 2009.9.4., 2012.10.4., 2013.8.13., 2014.12.10., 2016.3.17., 2017.4.11., 2018.3.1., 2020.3.18.>

③ 대표이사 및 개방형임기직 직원의 초임 연봉액은 “별표 4-2”의 기준에 따라 성남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9.4., 2012.10.4., 2013.8.13., 2014.12.10., 2016.3.17., 2017.4.11., 2020.3.18.>

④ 직원이 재직 중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경력 환산표에 따라 연봉을 재 확정한다. 다만, 휴직 및 정직 또는 대기발령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에 재 확정한다. <신설 2012.10.4., 2017.4.11.>

⑤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개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반영한다. <신설 2012.10.4.> <개정 2017.4.11.>

제14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성남시장이 매년 결정한 연봉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7.20.>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기본연봉인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10.4., 2021.7.20., 2023.3.15.>

③ 기본가산급은 인건비 인상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차등을 준다. 단, 대표이사는 매년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이사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0.4., 2017.4.11.>

④ 재단은 매년 당해연도 총인건비 집행계획을 성남시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4.> <개정 2013.8.13., 2020.8.25., 2021.7.20., 2023.3.15.>

제15조(성과연봉) ① 대표이사·개방형임기직·일반직·전문계약직·공무직의 성과연봉은 경영성과급으로 해당연도에 한해 지급하며(퇴사자 포함), 다음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0., 2016.9.26., 2020.8.25., 2023.3.15.>

② 재단의 이사장은 개인별 근무 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4., 2013.8.13., 2014.12.10., 2017.4.11.>

③ 제2항의 근무실적 평가와 지급방법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4., 2014.12.10.>

제16조(개인성과급) 삭제 <2016.9.26.>

제17조(경영성과급) ① 경영성과급의 재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남시장의 지급률을 총액으로 하며, 직급별 평균기본급에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9.26.>
 ② 기관평가는 정부 관련 부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의 평가를 우선한다. 단, 정부 관련 부처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를 받아 정한다. <개정 2009.9.4., 2014.12.10.>
 ③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10.>
 [제목개정 2016.9.26.]

제18조(승진시 기준기본급책정) ① 연봉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승진전의 기본연봉에 상위직급의 평균 연봉월액을 가산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책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준기본급 책정 시 제3조 12호의 당해 연도 임금인상률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 임금인상률이 반영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재 산정한다. <개정 2017.4.11.>
 [전문개정 2012.1.1.]

제19조(퇴직금) 재단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2.1.1.]

제20조(부가급여) 보수규정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2(연봉한계액) 재단 임직원의 연봉한계액은 “별표3”과 같다.
 [본조신설 2009.9.4.]
 [제목개정 2012.1.1.]

제 5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1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 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연봉재심청구) 이의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 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제23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연봉재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경영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0., 2020.3.18., 2023.3.15., 2023.7.19.>
 1. 노동조합 추천 위원 1명
 2. 사업본부장 1명
 3. 성남시 재단 소관 팀장 1명
 4. 인사부서 실장 1명
 ②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 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0.>
 ③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제24조(재심결과처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 후 1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보고의무) 삭제 <2023.3.15.>

제28조(고용승계자의 연봉) 고용승계자의 연봉은 승계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장이 정하며, 업무와 근무년수를 고려하여 연봉을 재 책정할 수 있다.

부칙(2007.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설립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9.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직원 연봉기준표) “별표4-2”는 발령한 날 이후에 임용되는 사무국장 및 관장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기본연봉) 제3항에 따른 초임연봉 산정방식은 2016.3.1. 입사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승진시 기준기본급책정)제1항과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3급에서 2급(부장)으로 최초 승진하는 경우 상위 직급이 없으므로 2급 개방형임기직의 평균 월봉액을 가산하여 기준기본급으로 책정한다.

부칙(2018.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7.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3.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7.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3.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2.10.4>

[별표 2] 삭제 <2012.10.4>

[별표 3] <개정 2012.10.4., 2013.8.13., 2014.12.10., 2016.3.17., 2017.4.11., 2020.3.18., 2023.3.15., 2025.2.7., 2025.3.17.>

연봉제 적용대상 연봉한계액표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대표이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공무원 3급 상당
개방형 임기직	본부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공무원 4급 상당
	감사실장, 정책소통실장, 센터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공무원 5급 상당
일반직	2급~6급	신규직원 연봉기준표 상의 당해 직급 최고호봉의 기본연봉과 직상위직급 최고봉의 기본연봉의 중간액	신규직원 연봉기준표상의 당해 직급 최저호봉의 기본연봉액	

[별표3-1] <신설 2014.12.10.>

경 력 환 산 표

해당분야 경력	환 산 율(%)
○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경력(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기간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 및 설립한 청소년관련법에 규정된 청소년시설 경력 및 투자기관, 출연기관 청소년관련분야 근무한 경력	10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관에 근무한 경력 ○ 교육, 연구, 언론 및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청소년관련법에 의거 등록된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관련분야 근무한 경력 ○ 채용된 직종과 같은 분야 근무경력 (종사원 30인 미만은 70%)	80
○ 채용된 직종과 다른 분야 근무경력 (종사원 30인 이상)	50

※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는 직종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청소년관련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별표 4-1] <개정 2012.10.4., 2013.8.13., 2017.4.11.>

신규직원(2급~6급) 연봉(기본급) 기준표

재 단 공무원	기 준 표				
	공무원5급	공무원6급	공무원7급	공무원8급	공무원9급
2급	당해호봉 상당				
3급		당해호봉 상당			
4급			당해호봉 상당		
5급				당해호봉 상당	
6급					당해호봉 상당

※ 각 직급호봉별 기본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상 기본급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의 연간 총 수령액을 합산한다.

[별표 4-2] <신설 2013.8.13., 개정 2014.12.10., 2016.3.17., 2017.4.11., 2020.3.18., 2023.3.15., 2025.2.7., 2025.3.17.>
[제목개정 2016.3.17., 2017.4.11.]

대표이사, 개방형임기직의 연봉(기본급) 기준표

구 분	연 봉 액	비 고
대표이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3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사장이 결정	공무원 3급 상당
본부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30퍼센트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	공무원 4급 상당
감사실장, 정책소통실장 센터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30퍼센트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	공무원 5급 상당

※ 대표이사의 연임 또는 개방형 임기직의 재임용시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연봉을 재 책정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함.

[별표 5] <개정 2013.8.13., 2014.1.21., 2017.4.11., 2020.8.25., 2025.3.17.>

연봉 계약서

I.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	--	--------	--	-----	--

2. 계약기간 : . . . ~ . . .

3. 연봉금액

기본연봉	원
성과연봉	원
부가급여	원

- (1)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관을 토대로 연봉제 시행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결정한다.
- (2) 월 지급되는 보수는 기본연봉을 12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성과연봉은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지급하며 12월에 정산하고, 부가급여는 연봉제규정을 준용한다.
- (3)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12월말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후 결정기로 함.
- (4)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II. 준수사항

- (1) 재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제반기준을 준용함.

※ 연봉계약서 교부: 재단은 연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근로자확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 . .

성 명 : (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 ○ ○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2.10.4>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2.10.4.>